

카르텔規制와 産業政策 (2)

李 奎 億
申 容 均

▷ 目 次 ◁

- I. 序 言
- II. 카르텔 規制의 法制
- III. 公共의 利益
- IV. 一定한 去來分野
- V. 競争의 實質的 制限
- VI. 不況카르텔
- VII. 合理化카르텔
- VIII. 시멘트 共販制
- IX. 不況産業의 構造調整
- X. 結 言

VIII. 시멘트 共販制

우리나라의 시멘트業界는 「物價安定法」이

발효된 1976년에 「不況카르텔」을 認可받은 이래 현재의 「獨占規制法」에 의한 제8차 認可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合法的 카르텔을 유지시켜 왔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시멘트産業의 特性·現況·카르텔認可背景 및 內容과 앞으로의 對策方向을 검토하기로 한다¹⁾.

1. 시멘트産業의 特性

가. 시멘트産業은 [圖 1]의 시멘트 製造工程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단순한 工程을 갖는 裝置産業으로서, Norman(1979), McBride(1981)등에 의하여 최근에도 立證된 바 있듯이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s)를 示顯하고 있으며 특히 技術의 進步에 따라 最小效率規模(minimum efficient scale)가 계속 增大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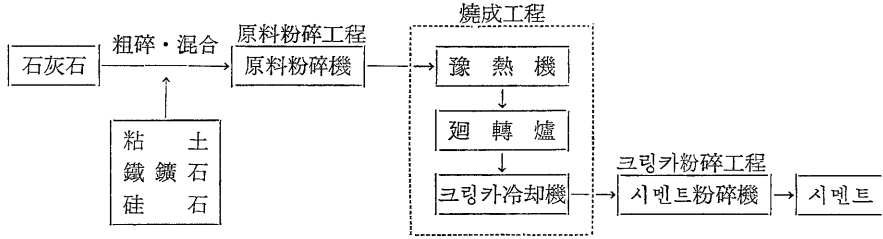
최근의 국제적인 最小效率規模는 年産 200萬噸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高麗와 現代를 除外한 5個 企業이 이 水準에

筆者：李奎億—韓國開發研究院 先任研究委員, 申容均—韓國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

* 本稿의 I~VII節은 第1部로서 本誌 第4卷 第2號에 掲載되었음.

1) 本節의 시멘트 關係 各種 統計資料는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및 大韓洋灰工業協會의 協助로 作成되었으며 全體製造業에 대한 統計는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1982)에서 引用한 것임.

〔圖 1〕 시멘트製造工程



〈表 2〉 廻轉爐能力의 國際比較(1979)

	韓國 ¹⁾	日本	臺灣	프랑스	西獨	美國	印度
工場當廻轉爐數(個)	3.9	4.0	2.0	2.1	2.5	2.5	0.8
廻轉爐當年間生産能力(千%)	670	612	406	249	248	212	527

註: 1) 韓國의 경우는 1981年 實績.

있거나 또는 上廻하고 있다(表 8 참조). 특히 시멘트 製造工程의 중심이 되는 廻轉爐(rotary kiln)에 있어서는 乾式 31個, 濕式 4個를 보유하고 있으며 工場當 生産規模는 國際的으로 上位에 속하고 있다(表 2 참조).

나. 시멘트産業은 裝置産業이므로 資本財가 生産의 規模를 결정해 주는 資本支配的(capital-

dominating)産業으로서 固定資産比率과 勞動裝備率이 製造業平均을 훨씬 초과하는 반면 投資効率は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는바, 이는 시멘트産業의 財務構造를 취약하게 하는 主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表 3 참조). 資本集約度를 資本費用(減價償却費+支給利子 등) 對 勞動費라고 定義한다면 일반적으로 資本支配度와 資本集約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²⁾ 우리나라 시멘트産業에 있어서는 資本集約도가 全製造業 平均値의 2.2倍정도이므로 資本集約的(capital-intensive)産業이기도 하다.

〈表 3〉 製造業과 시멘트産業의 主要經營指標 (1981)

	製造業 平均	시멘트 産業
固定資産比率(%)	40.5	62.9
勞動裝備率(百萬원)	7.6	40.5
資本費/勞動費(倍數)	1.16	2.56
總資本回轉率(倍數)	1.24	0.72
有形固定資産回轉率(倍數)	3.12	1.13
製品回轉率(倍數)	15.51	20.25
原材料回轉率(倍數)	17.97	28.92
總資本投資効률(%)	25.8	20.2
設備投資効률(%)	70.7	33.8
附加價値率(%)	20.7	28.2

이러한 屬性을 갖는 産業은 대체로 固定費의 比重이 크기 마련인데 固定費 對 變動費의 比率은 製造業平均이 0.47임에 비하여 시멘트 産業은 0.97이나 되고 總資産에 대한 固定資産의 構成比率이 높으므로 一般製造業平均에 비하여 製品 및 原材料回轉率은 높은 반면 資本의 回轉率은 낮은 現象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시멘트産業은 操業度가 상승할수록 平均生産費가 遞減하고 利潤이 증대되므로 競爭的 市場構造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2) Gold(1981) 참조.

需要減退時에는 變動費만 補填되더라도 生産을 계속하게 되어 破滅的 競爭(cut-throat competition)의 可能性이 큰 대표적인 産業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시멘트의 主原料는 石灰石으로 시멘트生産國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풍부하게 採取할 수 있는 반면, 廻轉爐를 稼動시키기 위한 熱消費가 많이 든다. 이러한 特性을 반영하여 材料費와 에너지費用(燃料費+電力費)의 比重이 全製造業의 平均 總製造原價에서는 각각 75.3%와 3.7%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하여 시멘트産業에서는 16.1%와 47.9%의 比重을 갖고 있다(表 4 참조). 즉 대부분의 一般製造業과 반대로 原料集約度(material-intensity)보다는 에너지集約度(energy-intensity)가 높는데, 이것은 시멘트産業을 에너지波動과 같은 外的衝擊에 극히 취약하게 하는 原因으로 지적할 수 있다.

라. 우리나라 시멘트産業의 後方聯關産業(downstream industry)은 시멘트消費量의 比

〈表 4〉 시멘트産業의 總原價構造(1981)

(단위: %)

製 造 原 價		80.8
材 料 費	16.1	
勞 務 費	4.7	
製 造 經 費	60.0	
燃 料 費	33.7	
電 力 費	14.2	
減 價 償 却 費	5.3	
運 搬 費	4.9	
其 他	1.9	
一 般 管 理 販 賣 費		10.4
營 業 外 費 用(支 給 利 子 等)		8.3
共 販 費 用		0.5
總 原 價		100.0

註: 政府의 價格審査對象業體인 雙龍과 東洋 2國社의 平均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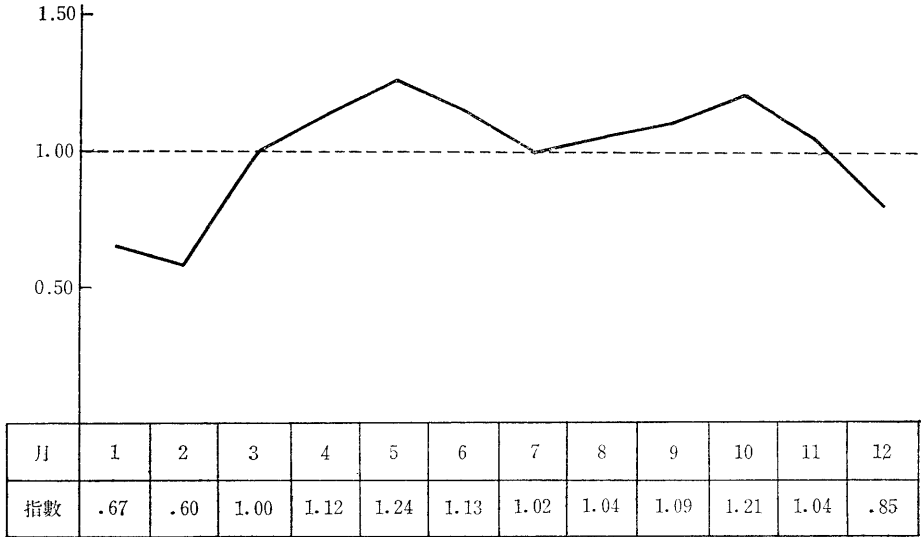
重으로 볼 때 民間建設(48.7%), 公共事業(11.4%), 시멘트製品(6.5%), 輸出(20.8%), 其他(12.6%)로 구성되므로 대체로 시멘트産業의 景氣는 建設·土木景氣에 좌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建設活動이 저조한 11月~2月の 冬期가 시멘트의 閑需期이며 3月~10月이 盛需期에 해당하는데 最閑需期 2月과 最盛需期 5月の 需要量隔差는 2배에 달하고 있다(圖 2 참조).

시멘트需要는 이처럼 季節性이 심한 반면 生産은 다른 化學製品과 같이 연중 계속되어야 하므로 자연히 保管施設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風化에 의한 品質의 自然的 退化와 막대한 在庫費用으로 인하여 시멘트의 在庫保存에는 限界가 있게 되어 不況期에는 다른 一般製造業에 비하여 資金負擔의 壓力이 훨씬 加重된다.

마. 시멘트工場의 分布를 보면 [圖 1]의 全工程을 망라하는 本工場 9個, 크링카粉碎와 包裝을 위한 分工場 8個, 包裝만을 위한 包裝工場 11個가 전국에 散在해 있다. 그러나 本工場은 石灰石 主產地에 偏在되어 있는데, 堤川·丹陽·寧越地域에 5個, 三陟·東海地域에 2個가 集中되어 각각 産業總生産能力의 42.5%와 52.5%를 점유하고 나머지는 聞慶과 長城에 각각 1個씩 所在하고 있다(表 5 참조). 消費의 地域的 集中은 生産面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서울·京畿 42%, 慶南 18%, 慶北 12% 등으로 分布되어 있다. 이처럼 生産地域이 偏在됨과 아울러 主生産地와 主消費地가 隔離되어 있기 때문에 輸送이 시멘트産業에서는 주요한 隘路로 대두된다.

바. 시멘트는 單位當 價値에 비하여 重量이

[圖 2] 시멘트需要의 月別 平均指數



註：需要指數는 1970年 1월부터 1982年 1월까지의 月別 內需販賣量을 X-II-ARIMA 技法에 의하여 구한 것임.

많은 荷重品の 일종으로서 生産地와 消費地가 隔離됨에 따라 輸送費의 負擔을 많이 안고 있다. 製造業 平均販賣原價중 輸送費의 比重은 1.3%이지만 시멘트의 경우는 13.9%에 달하고 있다. 더우기 시멘트 主産地인 忠北·江原地域은 無煙炭의 主産地이기도 하므로 한정된 鐵道輸送의 利用에 있어서 시멘트는 無煙炭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輸送隘路는 더욱 加重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의 趨勢를 <表 6>에서 보면 鐵道の 比重은 감소하는 대신 船舶의 比重增大가 현저하며 自動車의 경우도 대체로 增加趨勢에 있다. 輸送手段別 運賃의 比較는 각 運賃의 距離別 體系가 복잡하므로 정밀한 比較

<表 5> 地域別 시멘트需給分布(1981)

	生産 (%)	消費 (%)	本 工 場	分工場	包裝工場
서울·京畿	2.8	41.9		2	2
忠 北	27.1	3.5	4(丹陽：韓一·現代·星信, 堤川：亞細亞)		
忠 南	1.3	8.1		1	
全 北	—	4.2			
全 南	4.0	7.5	1(長城：高麗)		2
慶 北	8.4	12.0	1(聞慶：雙龍)	3	
慶 南	—	17.9			6
濟 州	—	1.5			
江 原	56.4	3.4	3(三陟：東洋, 寧越：雙龍, 東海：雙龍)	2	1
計	100.0	100.0	9	8	11

註：各道에는 直轄市가 포함됨.

Slag시멘트製造의 韓國高爐(50萬%)와 白시멘트製造의 유니온(5萬%) 및 현재 建設중인 漢拏(100萬%)는 集計에서 除外함.

〈表 6〉 시멘트 輸送手段別 利用比率

(단위 : %)

	鐵 道	自 動 車	船 船
1976	56.9	10.0	33.1
1977	49.1	19.6	31.3
1978	49.9	22.4	27.7
1979	49.5	21.6	28.9
1980	44.0	17.5	38.5
1981	37.5	18.2	44.3

는 곤란하지만, 屯當 運賃의 例를 들어 본다면, 서울—堤川間 內陸區間에서는 鐵道와 自動車の 運賃비가 1 : 1.9이며 北坪—麗水間 內陸區間的 鐵道와 北坪—木浦間 沿岸區間的 船舶의 運賃비는 1 : 0.7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內陸運送 중 自動車 比重의 증대로 인한 運送費의 追加負擔이 저렴한 船舶運送의 比重增大로 어느 정도 相殺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 시멘트의 品質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自然的 要因은 石灰石의 純度와 結晶狀態인데, 우리나라의 石灰石은 古生代에 生成된 것이므로 古生代後期 내지 中生代에 生成된 日本의 石灰石보다 다소 粗惡하며, 副原料인 粘土에 있어서도 이미 工場周邊地域의 可用量이 消盡되어 全國各地로부터 採取·運送해야 하며 그나마 難粉碎性 砂質이 다량 含有되어 있다. 이처럼 自然的 要因이 不利한 외에 設備·燃料·工程技術 및 輸出立地上的 要因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有利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國際競爭力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1982年初 輸出價格은 FOB 45.7弗/屯선으로서 당시

의 平均變動費 45.6弗/屯을 겨우 相當하는 정도였다.

한편 國內市場에 局限하여 본다면, 시멘트의 97%가 第1型 Portland시멘트로써 品質이 同質적이고 規格이 單一하여 商品分化(product differentiation)가 불가능하므로 價格競爭이 유일한 競爭手段이 된다. 그러나 시멘트의 최대 後方産業인 土木建設業에 있어서 시멘트는 平均的으로 建設費의 6%, 土木工事費의 3.5% 정도밖에 占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所要量도 기본적으로는 非價格의 要因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價格의 彈力성이 매우 낮아 價格引下의 경우에는 需要를 擴大시키지 못하고 收益性만 低下시키게 된다.

한편으로 시멘트는 單純한 工程에 의하여 製造되므로 生産費面에서 企業간에 큰 차이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高麗를 除外한 國內 6個業體의 1982年 현재 屯當 平均生産費를 보면, 平均總生産費의 標準偏差가 매우 적어 이를 단적으로 立證하고 있다³⁾(表 7 참조). 이러한 費用構造의 類似성과 이미 지적한 規模의 經濟性 및 需要의 非彈力성은 일반적으로 寡占産業의 카르텔化를 촉진시키는 要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멘트産業은 이에 해당하는 典型的인 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우리나라의 시멘트産業은 雙龍·東洋·星信·韓一·亞細亞·現代·高麗의 7個社가 分

〈表 7〉 시멘트 單位生産費(1982)

(단위 : %當, 원)

	固 定 費	變 動 費	總 生 産 費
算術平均	10,089	23,230	33,139
標準偏差	1,042	797	577

3) 變動費의 標準偏差가 固定費에 비하여 적은 것은 工程의 同一性에 起因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임. 平均總製造原價의 最大値는 雙龍의 34,189원이며 最小値는 現代의 32,275원임.

占하고 있는 寡占(oligopoly)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제1위 企業인 雙龍이 本工場 3個, 分工場 4個, 包裝工場 5個를 보유하고 國內總生産能力 및 生産實績의 49%와 54%를 점유하는 壓倒的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表 8 참조).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시멘트産業은 雙龍이 價格先導者(price-leader)의 위치를 갖는 Stackelberg型 寡占으로 볼 수 있는데, 雙龍은 以上の 占有率을 1976年對比로 7%포인트나 증가시켰으므로 市場支配의 地位를 강화하여 온 것으로 判別된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雙龍은 需要激減時 限界生産者를 淘汰시킬 수 있는 潛在力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最大企業인 雙龍은 從業員 6,000餘名, 自己資本 1千億원 規模의 巨大企業이지만, 高麗를 제외한 나머지 5個企業도 從業員 1,000名, 自己資本 100~300億원 수준이므로 單一企業으로서의 大規模이다. 더욱이 이들 業體의 대부분은 複合企業(conglomerate)의 一員으로서 시멘트의 後方聯關産業에도 많이 參與하고 있다. 즉 雙龍·東洋·韓一·亞細亞·現代는 建設會社를 系列會社로 갖고 있으며 高麗를 제외한 6個業體가 「레미콘」을 生産하고 있으며

部分的으로는 「콘크리트」製品을 製造하고 있다. 그러므로 大規模 建設會社를 보유한 경우에는 시멘트 販賣에 있어서 市場封鎖(market foreclosure)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시멘트市場의 競爭은 單一企業간의 單純한 競爭이 아닌 複合企業간의 競爭이므로 協助的 寡占 내지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으면 橫的補助(cross-subsidy)와 餘有資金力(deep pocket)에 의하여 더욱 掠奪的 價格行爲(predatory pricing)를 恣行할 수 있는 兩極端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2. 시멘트 카르텔

가. 共販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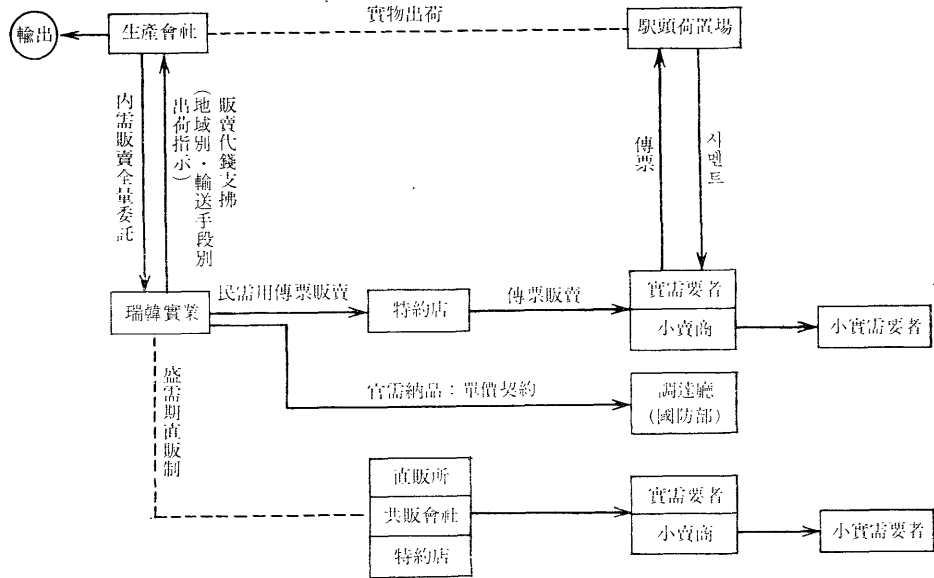
우리나라 시멘트産業은 1964年 11월부터 1965年 4월까지 共販制를 實施한 이후 1971年 9월~75年 3月の 期間에는 「韓國洋灰(株)」를 設立하여 內需·輸出의 양면에 걸쳐 共販을 施行하였다. 1976년에 다시 在庫累積이 深化되자 高麗를 제외한 6個 시멘트 生産者들은 當年度 3월부터 施行된 「物價安定法」에 의거하여 1976年 7월~77年 6月の 1年間 不況克服을 위한 共同行爲를 申請, 認可를 받고 1975

〈表 8〉 시멘트 製造業體別 規模(1981)

	自己資本 (百萬元)	生産能力 (千t/年)	生産實績 (千t/年)	稼働率 (%)	從業員 (名)	工場數 (個)	商標名
雙龍	100,266	11,510.4(49.1)	9,128.5(54.4)	79.3	6,173(48.8)	本(3),分(4),包裝(5)	雙龍
東洋	27,036	3,507.9(15.0)	2,441.5(14.6)	69.6	1,642(13.0)	本(1),分(1),包裝(3)	별
星信	30,354	2,501.4(10.7)	1,327.8(7.9)	53.1	1,023(8.1)	本(1),包裝(1)	天馬
韓一	35,962	2,349.6(10.0)	1,344.0(8.0)	57.2	1,295(10.2)	本(1),分(2)	三千里
亞細亞	18,408	1,798.5(7.7)	1,012.0(6.0)	56.3	1,073(8.5)	本(1),分(1),包裝(1)	코끼리
現代	11,694	1,207.8(5.1)	920.2(5.5)	76.2	984(7.8)	本(1)	호랑이
高麗	2,135	587.4(0.3)	603.3(0.4)	102.7	457(0.4)	本(1)	地球
計	225,855	23,463.0(100.0)	16,777.3(100.0)	71.5	12,647(100.0)	本(9),分(8),包裝(11)	

註: () 안은 構成比(%).

〔圖 3〕 시멘트 流通經路



年 12월에 設立된 바 있는, 「韓國洋灰(株)」의 後身인 「瑞韓實業(株)」을 통하여 카르텔行爲를 遂行하였다⁴⁾. 시멘트産業은 그 이래 合理化 내지 不況克服의 事由로 현재까지 8회에 걸쳐 共同行爲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附表 1, 2 참조).

共同行爲의 內容은 認可事由에 관계없이 設備制限과 種類・規格制限을 제외한 價格・條件・數量・販路制限의 行爲를 포괄하여 왔으며 共同行爲는 「瑞韓實業(株)」이 각 生産者와 獨占販賣契約을 締結하고 「瑞韓實業(株)」은 그대신 각 生産者가 추천하는 特約店과 特約販賣契約을 締結하는 형태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圖 3 참조). 즉 生産者와 特約店간의 流通經路에 「瑞韓實業(株)」이 介在하여 兩者間의 直接去來를 차단함으로써 價格이나 販賣條件에 관한 生産者間의 競争을 排除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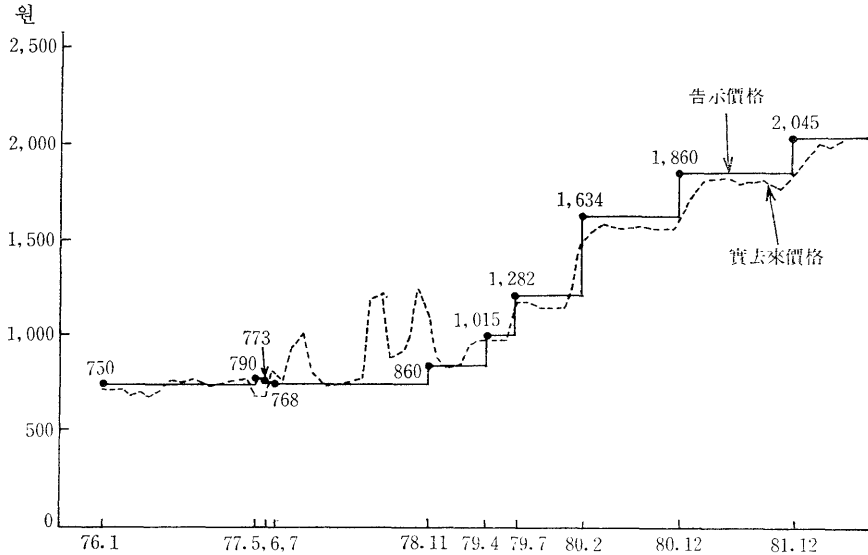
다.

각 生産者別 販賣比率은 生産能力을 基準으로 결정하며 去來地域制限은 7~8次 認可申請에만 明示되었지만 사실상 1次 카르텔부터 실시하여 온 것으로 地域別 需給安定과 各社別 輸送費의 平準化를 위하여 平行輸送을 抑制한다는 事由에 起因하고 있다. 價格에 관하여는 「物價安定法」이 施行되었던 6次 카르텔까지는 獨寡占價格審査制度에 따라 政府가 事前・直接規制하였고, 「獨占規制法」에 의한 7次 카르텔부터는 附隨的인 認可內容으로 되어 있다. 特約店 販賣價格(都賣價格)은 76年이래 市場狀況의 變動에 관계없이 工場渡價格에 6.2%의 마진을 附加하여 算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特約店價格을 基準으로 하면 5.8%의 마진率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시멘트價格은 典型的인 mark-up價格으로서 原價上昇(cost-push)要因이 그대로 消費者價格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멘트價格의 推移는 [圖 4]에서와 같이 下方硬直

4) 그러나 事後的으로는 1976年의 總稼動率이 95.9%, 內需稼動率은 69.7%이었으므로 카르텔認可事由의 妥當性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圖 4〕 시멘트 價格의 推移(都賣價格)



註: Bag시멘트 40kg 袋當價格, 원. 1978年 5月까지는 韓國經濟新聞에서 調査한 서울市中 都賣價格이며, 1978年 6月이후는 建設協會에서 調査한 實注文時勢임.

的 階段型(stop-go)을 나타내고 있는데, 1979年 4月이래의 不況期에 實去來價格이 告示價格을 下廻하고 있다는 것은 시멘트價格이 需要와 供給의 相互作用에 의하지 않고 결정되는 管理價格(administered price)임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카르텔하에서 시멘트價格은 전국적으로 같으므로 生産者는 자연히 遠距離輸送을 기피하게 되는바⁵⁾, 이러한 價格體系를 유지하기 위하여 카르텔을 결성하고 오히려 이 때문에 需給平準化를 위하여 카르텔이 必要하다는 主張은 矛盾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瑞韓實業(株)」과 特約店간의 「시멘트 特約販賣契約 追加協約書」(1981.11 改正)에 의하면, 契約期間中 特約店이 契約全量을 販賣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瑞韓實業(株)」은 未販量에 대하여 包裝시멘트는 袋當 17원, 벌크시멘트는 屯當 425원을 特約店에게 支給하며,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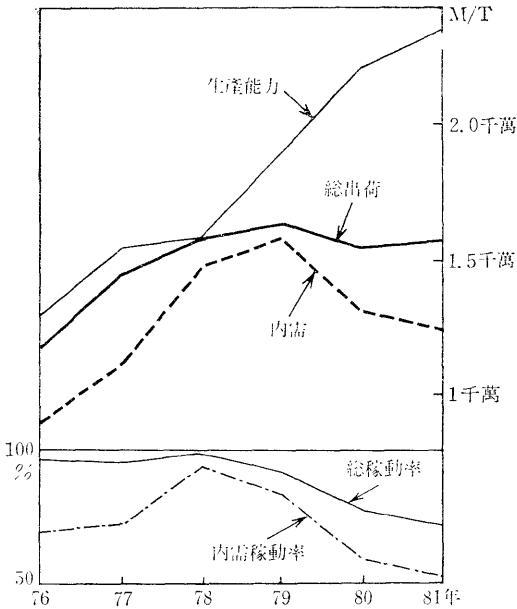
로 販賣總量이 契約總量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特約店은 同超過量에 대하여 袋當 18.70원(附加價值稅 포함)을 「瑞韓實業(株)」에 支給하도록 되어 있다(벌크시멘트는 超過販賣하지 않는다는 條項에 의거하여 過販이 발생하지 않음). 이러한 契約에 따라 不況期인 1981年 中 生産者側이 補償해 준 總額은 30億원에 달하였다. 이 制度는 일견 特約店의 收益을 安定化시키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不況克服이나 合理化와는 關係가 없는 許可事項 이외의 共同行爲이며 오히려 特約店을 生産者가 系列化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이다. 더구나 이 制度下에서는 販賣促進에 대하여 일종의 罰課金을 賦課하는 結果를 초래하므로 不況을 심화하며 好況을 억제하는 逆機能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合理化措置

시멘트産業이 카르텔期間 中 취한 合理化措

5) 이러한 시멘트價格의 特性에 따른 效果에 관하여는 拙稿(1979) 參照.

[圖 5] 시멘트産業의 生産能力 및 稼働率



置는 燃料節減 및 代替와 輸送手段의 擴大이다. 먼저 燃料節減을 위하여는 1977年 이래 기존의 35個 廻轉爐를 NSP(new suspension preheater kiln)化하고 있는데, 1977~80年間에는 5個가 완료되어 生産能力이 3.9% 增加하였고 1981~82年間 追加로 계획중인 7個의 改造가 완료되면 生産能力이 1977年 對比로 10.2% 增加하게 된다.

使用燃料는 1979年까지 全量을 B.C.油에 의존하였지만 1980年부터 石炭을 混燒하기 시작하여 1982年 3月 현재로는 高麗를 제외한 6個 生産者가 混燒施設改造를 완료하여 業體平均 混燒率⁶⁾이 86.6%에 달하고 있다. 備蓄施設(silo, 荷置場)에 있어서는 1975年の 貯藏規模 548千屯이 1982년에는 1,988千屯으로 증대되었지만 아직도 生産能力의 8% 정도에 불과하

6) 混燒率=石炭熱量/總所要熱量. 石炭熱量을 B.C.油 單位로 換算하는 換算率은 石炭熱量(6,600cal-減損水分600cal)÷B.C.油 熱量 9,900cal=0.666을 적용함.

다.

輸送手段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중 트럭이 77臺에서 510臺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鐵道車輛은 574臺에서 683臺, 船舶이 14隻에서 18隻으로 微增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企業合理化 措置는 企業內的 措置로써 가능한 것이며 카르텔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면, 좀 더 중요한 産業合理化에는 오히려 逆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즉 1976年이래 현재까지 生産能力은 93.7%(施設改造에 의한 3.9%포함)나 증가하였으나, 内需는 47.5%, 輸出은 85.6% 증가하여 總出荷量은 54.0%의 증가에 머물러 施設過剩이 확대되었다.

여하간 현재 시멘트産業의 不況은 스스로의 過剩投資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圖 5]에서 보면 1976年の 總稼働率(總生産量/生産能力)이 95.1%였으나 그후 계속 減少趨勢를 보여 81년에는 71.5%로 低下되었는데 그 主要原因은 施設의 급속한 膨脹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시멘트産業은 投資過剩→不況→카르텔→投資過剩의 惡循環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 共同行爲 認可事由

시멘트産業에 대한 8次의 共同行爲는 1982年 6月에 不況克服의 事由로 1年間을 대상으로 認可되었다. 아래에서는 申請事由와 審査報告書를 중심으로 「施行令」의 不況카르텔 認可要件이 실제로 어떻게 解析·適用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본다. 共同行爲의 事由는 “需給의 不均衡이 극심한 狀況下에서 自滅的인 出血販賣競争을 방지하여 不況을 克服함과 동시에 地域別 需給安定을 기하려는 것”으로 販賣

條件制限, 價格制限, 出庫制限, 去來地域制限의 4個行爲에 대한 認可를 申請하였으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共販期間中 價格을 引上하지 아니할 것과 登錄期間終了時 「瑞韓實業(株)」의 解體를 前提로 한 「瑞韓實業(株)」의 解體 計劃書を 提出할 것 등을 附帶條件附로 承認하였는데, 「施行令」 19條 1項에 열거된 不況 카르텔 要件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① 시멘트需要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그후에도 그 상태가 持續될 것이 明白한가의 與否 :

1979年 이후 需要가 계속 감퇴하였으며, 전반적 景氣도 계속 침체하여 內需展望도 不透明할 뿐만 아니라 輸出도 缺損輸出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要件을 充足한다.

② 當該 商品의 去來價格이 3個月이상 계속하여 平均生産費를 下廻하고 있는 경우 :

申請人의 主張에 의하면 價格이 平均生産費를 下廻한 경우는 없었지만 이것은 共販存續의 結果이고 만약 不況時에 共同行爲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시멘트産業의 特性으로 인하여 自滅의 價格競爭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하여 去來價格은 平均生産費를 크게 下廻할 것이라고 하지만, 從來의 獨寡占價格이 카르텔 價格으로 存續되고 있는 狀況下에서 本要件의 充足은 要求할 수 없다.

③ 當該 事業分野의 상당수의 企業이 事業活動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從來의 完璧한 카르텔下에서 共販價格의 維持, 業體別 均衡稼働率維持, 販賣代金の 共同配分을 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本要件의 充足은 要求할 수 없으며, 다만 競爭關係에 있을 경우 一部 財務構造脆弱企業의 事業活動에 隘

路가 豫想되고 있다.

④ 企業의 合理化로써는 第1號 내지 3號의 事項을 克服할 수 없는 경우 :

原價節減 및 經營合理化로써 다소의 效果達成은 可能하나 內需稼働率이 50%水準인 現狀 況下에서는 合理化에 의한 克服이 不可하므로 要件을 充足한다.

다음으로 「施行令」 19條 3項의 消極的 要件중에서 가장 중요한 “共同行爲의 內容이 不況을 克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生産數量, 設備制限만으로는 過當廉賣에 의한 過當競爭을 防止할 수가 없고 共同販賣에 의한 販賣代錢의 共同利用, 相互融通이 없으면 不況의 對處가 어렵고 카르텔 維持도 곤란할 것이며 承認期間이 6個月이면 不況克服에 隘路가 豫想되어 1年이 불가피한 것으로 認定하였다.

이상의 認可事由에서 보면, 施設過剩으로 인한 過當投賣의 가능성을 認定하여 共販을 許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申請事由에서도 強調되어 있다. 그러나 過當投賣는 일종의 不公正去來行爲로서 規制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가능성을 排除하기 위하여 價格카르텔을 許容한다는 것은 適用除外 카르텔認可의 法理的 觀點에서 볼 때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겠다. 더우기 輸送費 負擔이 큰 시멘트의 價格이 전국적으로 同一해야 한다는 經濟的 論理가 없는 이상 同一價格을 維持하면서 地域別 需給安定을 위하여 카르텔이 필요하다는 것은 妥當성이 없을 것이다.

시멘트産業의 不況은 需要의 減退보다는 施設過剩에 起因하는 것이므로 施設縮小를 중심으로 하는 産業合理化措置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멘트産業은 1971年이래 10餘年間

계속 價格카르텔만을 維持하는 일면 生産規模는 오히려 加速的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근본적인 産業構造調整을 회피하여 왔다. 즉 過剩施設의 책임을 價格카르텔을 통하여 一般消費者에 轉嫁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公共의 利益에 符合한다고 볼 수 없다.

一般的으로 過剩施設(excess capacity)이 발생하는 要因으로는 短期的 需要減退, 過剩投資, 衰退産業 및 進入障壁의 4가지가 지적되는데, 우리나라 시멘트産業의 경우는 過剩投資에 의한 構造的 不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價格카르텔로 對處하려는 것은 올바른 解決策이 되지 못한다.

K. 不況産業의 構造調整

1. 不況카르텔의 効果

이미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獨占規制法」에서 適用除外 共同行爲로 認定하는 不況카르텔은 法 및 施行令의 文理로 보아 일단 構造的 不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構造的 不況産業의 避難手段으로 카르텔이 利用될 때 惹起되는 문제를 시멘트 共販制를 事例로 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다시 一般論的인 觀點에서 再照明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不況카르텔은 근본적으로 競争에 의하여 淘汰되어야 할 非效率的 企業의 殘存을 가능하게 하므로 該當産業으로부터의 資源移動을 통한 産業轉換을 抑止시킨다는 의미에서 經濟

의 效率化를 阻害한다. 특히 循環的 不況은 巨視經濟的 現象이므로 經濟全體의 有効需要를 振作시키는 政策만이 不況打開策이 될 것인데 安易하게 카르텔에 의존하여 不況에 對處하도록 한다면 全經濟를 카르텔體質化하게 될 우려가 크다.

② 不況카르텔은 不況의 原因을 除去할 수 없고 카르텔에 의하여 不況을 克服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不況을 심화시키게 된다. 즉 不況카르텔은 需要創出이나 非效率的 企業 및 過剩設備의 整理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텔 參加事業者가 一律的으로 供給을 축소하여 需給均衡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操業短縮과 함께 原價上昇에 의하여 收益성이 더욱 惡化되고 이를 補填하기 위하여 價格을 引上한다면 需要를 다소라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不況카르텔이 長期間 存續하게 된다면 不況으로부터의 自生的 回復力도 상실하게 되어 當該産業의 不況을 固定化시키게 될 것이다.

③ 不況기에 카르텔을 容認하는 것은, 需要豫測의 錯誤로 발생한 過剩投資의 責任을 當事者が 아닌 一般消費者에 轉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生産數量의 制限이 현재 生産能力을 기준으로 하여 比例的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한, 好況期の 設備投資는 過多하게 되기 마련이다.

결국 構造的 不況의 근본적 對策은 資源을 該當産業으로부터 利潤성이 높은 다른 産業으로 再分配하는 것인데, 不況카르텔은 그러한 과정을 阻害하거나 遲延시키게 될 위험이 크다. 構造的 不況카르텔은 이러한 資源再分配過程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副作用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에서만 認可되어야 하는 것

이며 카르텔의 行爲는 반드시 過剩設備의 廢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2. 産業政策의 機能

構造的 不況의 根本對策이 施設縮小이며 이것이 産業內에서 自然的으로 이루어지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문제는 「獨占規制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현재의 「審査基準」에서는 設備의 新增設制限에 관한 共同行爲에 施設의 共同廢棄를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이는 그러한 行爲가 「認可」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構造的 不況에 대한 法的 對應手段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産業構造調整問題를 논의하기 위하여 우선 國家의 産業政策의 性格을 검토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産業政策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⁷⁾. 産業基盤政策은 下部構造에 관한 것으로서 個別企業 및 産業의 活動強化를 위한 實物的 基盤形成을 포함한다. 産業秩序政策은 企業 및 産業의 行動에 대한 秩序의 範圍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自由經濟體制에서는 公正하고 自由스러운 市場秩序의 維持暢達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産業經過政策은 産業의 經過現象에 대해서 量的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서 財政·金融 등 巨視經濟政策과 個別的 産業經過政策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다시 特定基準을 설정하여 이에 合致하는 産業을 育成·振興시키는 産業構造政策과 특정한 幼稚産業 및 수시로 대두되는 問題産業의 활동에 개입하는 政策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獨占規制法」은 國家의 産業秩序政策의 핵심으로서 産業組織을 다루는 것인 반면, 産業構造政策은 産業秩序政策에 의해서 부여된 經濟制度 안에서 特定産業 내지 企業의 經過現象에 대하여 部分的이며 潤滑油의인 조치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원래 自由經濟에서의 産業構造는 企業의 자유로운 選擇과 活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구성됨을 原則으로 하지만, 國家經濟政策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가 例外的으로 간섭하여 變更 내지 形成시킬 수 있다. 따라서 産業構造政策은 産業秩序政策에 從屬의·補整의 機能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近年 우리나라의 重化學投資調整策은 産業秩序政策과 연결되었어야 하며, 시멘트 共販制와 같은 産業秩序政策은 過剩施設處理 등 産業構造政策의 措置로 보완되어야 한다. 대체로 産業構造法은 中小企業育成이나 각종의 個別産業振興을 목적으로 하는 助長法의 형태를 갖지만, 構造的 不況産業의 縮小調整을 위한 法的 根據도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

3. 産業構造法制

構造的 不況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西獨의 「競爭制限法」 4條에서는 經濟의 特定部門에 있어서 需要의 永續的 變化에 따른 販賣減退에 대처하기 위한 危機카르텔(crisis cartel)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生産能力의 恒久的·物理的 削減에 관한 計劃을 前提條件으로 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獨禁法」의 不況카르텔이 기본적으로 循環的 不況을 대상으로 한다는 연유로 「特定不況産業安定 臨時措置法」(1979年: 이하 「不況産業法」으로 칭함)을

7) 新野(1974).

制定하였다. 日本의 「不況産業法」은 여러 면에서 논의해 볼 만하지만 우리나라의 法制와 관련하여 示唆해 주는 한도내에서만 검토한다.

「不況産業法」은 石油波動 이래 過剩設備의 顯在化와 收益의 大幅 低下를 보인 業種이 構造的 不況業種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一部 特定不況業種의 過剩設備를 政府의 計劃에 따라 처리시키려는 소위 「指示카르텔」의 형성을 규정한 것이다. 이 法은 1983年 6月末까지만 유효한 限時法인데, 「特定不況産業」이란 “內外的 經濟의 事情이 현저히 변화함에 따라 그 業種에 속하는 事業의 目的物인 物品을 製造하는 設備의 生産能力이 현저히 過剩하게 되고 또한 그 상태가 長期間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業種에 속하는 事業者의 相當部分의 經營의 현저한 不安定이 長期에 걸쳐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業種으로서, 設備의 處理를 행함으로써 그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칭한다⁸⁾.

設備處理는 主務大臣이 産業構造審議會의 意見을 들어 작성하는 「安定基本計劃」에 따라 행하되⁹⁾, 當該業種의 事業者가 고용하는 勤勞

者의 雇傭安定 및 關聯中小企業者의 經營의 安定에 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다. 當該事業者는 設備處理 및 기타 措置를 自主적으로 행하도록 노력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主務大臣이 公正取引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設備處理에 관한 共同行爲를 ‘指示’할 수 있다.

指示의 要件은, 當該不況産業에 속하는 事業者의 自主적인 努力에 의해서는 「安定基本計劃」에 의한 設備處理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있어서 當該産業에 속하는 事業者의 相當部分 事業의 계속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것이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현저한 支障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不況카르텔의 積極的 要件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다. 共同行爲의 消極的 要件에 있어서는, 設備處理가 결국 雇傭減退를 수반하기 마련인 것을 고려하여 當該共同行爲의 指示를 받는 事業者의 從業員의 地位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별도로 규정한 반면 指示카르텔의 성격은 반영하여 카르텔參加 및 脫退의 自由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不況카르텔의 경우와 같다.

「不況産業法」은 그밖에도 計劃的인 設備處理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資金등의 借入에 관한 債務를 보증하고 그 資金등의 融通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信用基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法은 競爭制限을 指示하는 經濟統制法의 性格과 아울러 構造的 不況産業에 대한 融資銀行이나 商事救濟法의 性格도 갖고 있다. 「不況産業法」은 「安定基本計劃」의 실현을 기하는 것을 共同行爲의 목적으로 하여 이것이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積

8) 同法の 2條에서는 ① 平爐 혹은 電氣爐를 사용하는 普通鋼의 鋼塊 또는 鋼材의 半製品의 製造業 ② 알루미늄 製造業 ③ 合成纖維製造業 ④ 船舶製造業을 구체적으로 指定하고 本文의 規定은 ⑤號로서 一般指定하고 있지만, 이상의 4個 産業도 결국은 ⑤號 要件을 충족시키는 것임.

9) 「安定基本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設備의 處理를 행하여야 할 設備의 種類 및 그 生産能力의 合計, 當該設備에 있어서의 設備의 處理方法 및 期間, 기타 設備의 處理에 관한 事項
 ② 設備의 處理와 함께 행하여야 할 當該設備의 新設, 増設 및 改造의 制限 또는 禁止에 관한 事項
 ③ 設備의 處理와 함께 행하여야 할 事業의 轉換 및 기타 措置(雇傭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한 措置를 포함)에 관한 事項

極的인 規制의 구상을 근거로 하지만 不況카르텔은 自由競爭秩序의 유지에 대한 불가피한 適用除外로서의 消極的 措置이므로 兩者는 그 基本的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우기 指示카르텔은 既存 大企業의 既得權을 옹호하는 성격을 갖기 마련이며, 信用基金制度는 大企業保護에 이용되어 法全體의 효과가 反競爭의 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개괄한 「不況産業法」의 본질적 문제는, 바로 産業構造政策을 産業秩序政策과 연결하여 다루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西獨과 日本의 法例를 참고로 하여 不況카르텔에 대한 우리나라 「獨占規制法」의 改善方向을 제시한다면 循環的 不況과 構造的 不況을 구분하여 前者의 경우에는 극히 例外的으로 短期間에 걸쳐 카르텔을 허용하되 價格制限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며, 後者에 대하여는 過剩施設의 廢棄를 내용으로 하는 카르텔만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構造的 不況産業에서는 企業의 離脫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카르텔을 통하여 人爲的으로 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適用除外 카르텔로서의 不況카르텔은 競爭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公共의 利益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므로 企業의 衰退와 離脫에 따른 副作用을 最小化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小數企業의 區分별한 增設로 産業全體에 永續的인 施設過剩이 발생하고 그 弊害를 카르텔로써 대처하게 되면 過剩施設의 문제를 惹起시킨 企業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유형의 施設投資는 「獨占規制法」 3條(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의 4號에서 금지하고 있는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事業者를

배제하기 위하여 施設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行爲”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3條의 적용을 통하여 施設過剩의 원인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 12條 但書에서 허용하는 不況카르텔의 要件을 수정하여 構造的 不況의 事後的 處理手段으로 이용한다면, 産業秩序政策과 産業構造政策의 조화를 기하면서 바로 公共의 利益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X. 結 言

本稿에서는 「獨占規制法」의 共同行爲에 관한 規制制度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結論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獨占規制法」은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통하여 經濟秩序를 정립하려는 것으로서, 自由競爭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고 나아가 國民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適用除外 카르텔의 근거가 되는 公共의 利益이라는 개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本稿의 초점이 되어 있는 不況카르텔과 合理化카르텔도 그 범위내에서만 認可될 수 있도록 法이 정비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두가지의 適用除外 카르텔에 관하여 「獨占規制法」은 共同行爲의 認可事由로서만 不況克服과 産業合理化를 지정하고 있을 뿐 그 行爲內容에 있어서는 각각의 카르텔에 귀속되는 固有行爲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共同行爲가 두가지 목적에 똑같이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불필요한 共同行爲가 남용될 여지를 갖고 있다. 특히 카

르텔 중 가장 弊害가 큰 價格카르텔에 대하여 별도의 制限要件이 없이 다른 형태의 카르텔과 같은 法的 位置를 갖고 있으므로 濫用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3) 不況카르텔은 構造的 不況을 대상으로 한다고 간주할 수 있겠지만, 文理上 명확하지가 않다. 본래는 循環的 不況에 대한 緊急避難措置로서 認可하도록 되었으나 그 要件을 설정함에 있어 嚴格性を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構造的 不況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으로 사료되기도 한다. 여하간 構造的 不況과 循環的 不況은 그 發生原因과 對應手段이 다르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要件을 별도로 설정하되, 특히 構造的 不況의 克服을 위한 카르텔을 認可하려면 過剩施設의 處理를 前提條件으로 해야 할 것이다.

(4) 合理化카르텔에 관하여는 「獨占規制法」이 적어도 用語上으로는 産業合理化와 企業合理化를 혼동하고 있다. 前者는 施設 및 稼動

率 調整등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반드시 내포하지만, 後者는 企業內的 措置로써 社會的 費用을 절감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共同行爲로써만 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그런데 合理化카르텔의 목적을 企業合理化로 설정하는 반면 그 手段은 産業合理化 및 不況克服을 위한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一貫성을 잃고 있다.

(5) 「獨占規制法」에 의하여 認可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카르텔인 시멘트 共販制의 내력에서 볼 수 있듯이 價格카르텔이나 數量카르텔은 不況對處를 위한 根本對策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결국 構造的 不況을 循環的 不況에 대한 對策으로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례에서 우리는 産業構造政策과 産業秩序政策의 調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構造的 不況對策으로서는 過剩施設의 처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參 考 文 獻 ◁

李奎億, 『市場構造와 獨寡占 規制』,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18, 1977.
_____, 「우리나라 카르텔의 現況과 對策」,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加藤良三, 『市場構造와 獨禁法』, 東京, 千會書房, 1976.
根岸哲, 「獨禁法適用除外規定의 位置づけ」, 『公正取引』, 1969年 12月號.
今村成和, 「投資調整와 政府의 介入」, 『公正取引』, 1965年 5月號.
_____, 『私的獨占禁止法의 研究(三)』, 有斐

閣, 東京, 1969.
_____, 『獨占禁止法』, 有斐閣, 東京, 1978.
金澤良雄, 『經濟法』, 有斐閣, 東京, 1980.
丹宗昭信, 『獨占および寡占市場構造規制의 法理』,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1976.
_____, 「特定不況産業安定臨時措置法와 獨占禁止法」, 『公正取引』, 1978年 7月號.
新野幸次郎, 「獨禁法改正によせて」, 『經濟評論』, 1974年 12月號.
實方典二, 「獨禁法와 公共의 利益」, 『公正取引』, 1970年 1月號.
越後和典, 「不況カルテル와 獨禁政策」, 『公正

- 取引』, 1972年 12月號.
- 日本經濟法學會 編, 『獨占禁止法講座Ⅱ: 獨占』, 商事法務研究會, 1976.
- 正田彬 編, 『カルテルと法律』, 東洋經濟新報, 東京, 1978.
- , 『全訂獨占禁止法: I』, 日本評論社, 東京, 1981.
- 出雲井正雄, 『新獨占禁止法の解説』, 時事通信, 東京, 1953.
- Areeda, Phillip, and Turner, *Antitrust Law: An Analysis of Antitrust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Vol. II, Lexington, Mass.: Little, Brown & Co., 1978.
- Dewey, D., *The Theory of Imperfect Competition: A Radical Reconstru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 , “Information, Entry, and Welfare: The Case for Collu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79.
- Edwards, Corwin D., *Control of Cartels and Monopolies*, 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 Inc., 1967.
- Elzinga, Kenneth G., “Defining Geographic Market Boundaries”, *Antitrust Bulletin*, Winter 1981.
- Gold, Bela, “Changing Perspectives on Size, Scale, and Returns: An Interpretive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81.
- McBride, Hart E., “The Nature and Source of Economies of Scale in Cement Production”, *Southern Economic Journal*, July 1981.
- Norman, G., “Economies of Scale in the Cement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June 1979.
- OECD, *Guide to Legislation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Paris, 1976.
- , *Comparative Summary of Legislations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Paris, 1978.
- Patinkin, D., “Multiple-Plant Firms, Cartels, and Imperfect Competi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1947.
- Richardson, G.B., “Price Notification Schemes”, *Oxford Economic Papers*, November 1967.
- Walker, Geoffrey de Q., *Australian Monopoly Law*, Sydney: Griffin Press, 1967.

〈附表 1〉 시멘트 카르텔의 認可內容

	1, 2 次	3, 4 次	5, 6 次	7, 8 次
認可內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販賣價格의 維持 • 販賣條件의 協定 • 生産 · 販賣 · 出庫의 調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販賣價格의 維持 • 販賣條件의 協定 • 生産 · 販賣 · 出庫의 調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販賣價格의 維持 • 販賣條件의 協定 • 生産 · 販賣 · 出庫의 調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販賣價格의 決定 · 維持 • 販賣條件의 協定 • 生産 · 販賣 · 出庫의 調節 • 去來地域의 制限
承認事由	不況克服	需給安定 및 産業合理化	不況克服	不況克服
承認期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次 : 1976. 7. 1 ~ 1977. 6. 30 • 2次 : 1977. 7. 1 ~ 1978.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次 : 1978. 7. 1 ~ 1979. 1. 31 • 4次 : 1979. 2. 1 ~ 197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次 : 1980. 1. 1 ~ 1980. 12. 31 • 6次 : 1981. 1. 1 ~ 1981.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次 : 1981. 6. 1 ~ 1982. 5. 31 • 8次 : 1982. 6. 1 ~ 1983. 5. 31
附帶條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適正價格維持 및 需給圓滑化 ②會社別 輸出義務量 履行 ③共販機構의 運營方法과 輸出缺損의 補償方法에 관한 協約을 事前에 主務部長官이 承認 ④競爭制限行爲實施狀況의 每月報告 • 2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競爭制限行爲로 인한 生産 및 需給上의 弊害가 없도록 自體調整 ②延長滿了 1個月前에 競爭制限行爲의 廢止 또는 實施期間의 再延長與否의 事前檢討 ③其他는 1次承認時의 條件과 同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競爭制限行爲實施狀況의 月別報告 ②需給安定을 爲한 主務部長官의 命令遵守 ③社別 消費地備蓄計劃의 樹立 ④輸出缺損補償制의 廢止 • 4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需給安定을 爲한 主務部長官의 命令遵守 ②競爭制限行爲實施狀況의 月別報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政府指示輸出義務量 履行 ②競爭制限行爲實施狀況의 月別報告 ③'80獨寡占品目解制時 自動解體 • 6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時 새로히 登錄, 內容變更 및 取消時 主務部長官命令履行 ②去來 · 販賣條件의 決定, 變更時 政府의 事前承認 ③競爭制限行爲實施狀況의 月別報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價格의 事前承認 ②非參加事業者의 活動制限禁止 ③크링카는 除外 ④共同行爲實施狀況의 月別報告 ⑤段階別 解體計劃樹立 • 8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每 3個月 解體計劃 推進結果報告 ②期間中現在價格維持 ①每 3個月 合理化推進結果報告 ④非參加事業者의 活動制限禁止 ⑤크링카는 除外

〈附表 2〉 시멘트 카르텔의 認可背景

承認期間	承認事由	背 景
76. 7. 1 ~77. 6. 30	不况克服	① 3個社(東洋 160만톤, 韓一 110만톤, 亞細亞 110만톤) 增設稼動으로 供給能力이 大幅 增大된 反面 需要는 減退되어 供給過剩에 의한 操短 不可避 ② 輸出價格의 缺損幅增加로 自家補償制實施 不可避
77. 7. 1 ~78. 6. 30	不况克服	① 前年에 이어 需要不振現象이 解消되지 못하여 操短規模는 200만톤으로 擴大 ② 輸出缺損은 여전히 自家補償制 實施
78. 7. 1 ~79. 1. 31	需給安定및 産業合理化	建築景氣의 異狀過熱現象과 새마을住宅事業 등의 影響으로 시멘트需要가 暴發的으로 增大됨에 따라 輸出을 中斷하면서 內需供給安定을 爲한 地域別 需給調節機能이 緊要하게 됨.
79. 2. 1 ~79. 12. 31	需給安定및 産業合理化	前年度의 未供給 移越分과 輸送力不足에 의한 需給波動防止(共販에 의한 對實需要者 直販制 實施)
80. 1. 1 ~80. 12. 31	不况克服	① 79年 下半年부터 實施된 緊縮政策과 78年 8月의 不動產投機抑制效果 등으로 景氣沈滯 ② 한편, 供給은 雙龍 大單位 280만톤(2次分)과 星信 110만톤의 增設分 正常稼動으로 供給過剩招來 操短規模 400萬톤 豫想
81. 1. 1 ~81. 5. 31	不况克服	① 80年 需給狀況이 當初豫想보다 深刻하여 稼動率 77%記錄 ② 81年度에도 內需伸張이 期待될 수 없으며 稼動率은 前年과 같은 水準으로 豫想되며 操短規模도 80年과 같이 約 500만톤에 이를 것임.
81. 6. 1 ~82. 5. 31	不况克服	① 80年末 延長許容時 및 前年同期에 비하여 더욱 深刻한 不况狀態에 있음 ② 將來需要의 繼續減少與否는 不透明 ③ 相當數企業의 事業繼續이 困難한 狀態
82. 6. 1 ~83. 5. 31	不况克服	① 79年 以後 需要의 繼續減少(81年, 總稼動率: 71.5%, 內需稼動率: 50.2%) ② 輸出赤字(輸出價格: FOB 45.7 \$/t, 變動費: 45.6 \$/t)로 採算性 惡化 ③ 內需稼動率이 低下되어 合理化에 의한 不况克服 不可